

7. 감사의견서

농협법 제71조 제1항(결산보고서의 제출, 비치와 총회 승인) 및 동구미농협
정관 제139조 제1항(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)에 의하여 2025년 1월 17일
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
잉여금처분(안)의 각 조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함을
인정합니다.

2025년 1월 21일

동 구 미 농 협 동 조 합

감사 지종부 (인)

감사 오일식 (인)

